

#### ⑥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 함

라) 가산연수

##### (1) 적용 대상 및 가산연수 요약표

적용 대상	가산연수
사범계학교(수학연한 2년 이상,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1년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자	
- 사범계학교 졸업자	2년
-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1년

##### (2)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 (가) 적용 대상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나) 적용 방법 : 적용 대상자의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함  
 (다) 가산연수 인정기준

교원자격증	적용법령	적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4호 해당 교원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 교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 '사서교사 2급' 제4호 포함

#### [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시 주의사항 ]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음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함

※ 1989. 12. 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송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